

■ 법률 칼럼

### 최근 이민 소식

최근 이민 소식을 간추려 드립니다.

#### 1. 이민국 대면 서비스 재개

6월 4일부터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제 의뢰인의 시민권 선서식이 6월 5일과 6월 15일 각각 잡혔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 다.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4일부터 영 주권/시민권 인터뷰, 시민권 선서식, 지 문 날인, 인포패스 등의 대면 접촉 서 비스가 각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시 작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밀려 있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등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. 시민권 영주권 신청 중이신 분들은 인터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 시길 바랍니다.



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. 특히 사항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계 속 승인 가능일 오픈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USCIS는 Filing Chart를 통해 2020년 6월 한 달 동안도 이민청원서 (I-130)와 영주권 신청서(I-485)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.

#### 2. 6월 1일부터 급행서비스 재개

지난 3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급행 서 비스(Premium Service)를 6월 1일부 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상 세한 내용을 보면 6월 1일부터 I-140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급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I-129(취업 비 자, 종교비자, E-2 Visa)의 경우는 6 월 8일 이전에 접수되어 현재 접수증 을 받은 케이스에 한해서 6월8일부터 급행으로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합 니다. 그리고 6월 22일 이후부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행서비스 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

#### 3.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 안내 (취업 이민 3순위 전진 / 영주권자 배우자 동 시 접수 가능)

우선 가장 큰 소식은 취업 3순위 이 민에 관한 것입니다. 2020년 6월 1일 부터 적용되는 6월의 영주권 비자 블 레탄에 따르면 3순위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은 10개월 1주가 진전되었습니 다. 3순위 접수 가능일(Filing Date)은 지난달과 같은 날짜 즉, 2019년 4월1 일로 동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1순위, 2순위 취업이민 오픈(current)

#### 4. 지문 날인 면제 증가

노동허가증(EAD), 재입국허가서(Re -entry permit), 여행허가서(Advance Parole) 재신청 그리고, 기타 영주권 갱신 조건부 해제 등에는 지문 날인이 요구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대 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민 지문에 시스템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지문 채 취 없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DACA 연장 신청 수속기간 단축

최근 DACA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Fingerprint과정이 없이 2달 전후 기 간에 승인을 해 주고있습니다. Renew 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이민국이 120일 이내 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서류 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.

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 
천관우 변호사

● LA Office: (213) 232-1655  
● OC Office: (714) 522-5220

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

■ 치과 칼럼

### 심미 임플란트 치료 II



치아가 상실될 경우 일어나는 치아 주 변 조직의 변화는 심미성이 강조되는 상악 전치 부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인자라는 점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.

심미성을 유지하거나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해 오 긴 했지만 아직 예측 가능한 치료법은 사실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.

그래도 이러한 조직 변화의 양을 줄이 기 위해 현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부 가시술법들과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.

앞서 설명했듯이 임플란트 즉시 식립 술을 치료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의 결정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, 연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 다. 물론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다고 조 직의 변화가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
임플란트 크기와 치아 뿌리의 크기 차 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에 충분한 뼈이 식이 병행되어야 변화의 양이 줄어든다 고 합니다. 이 경우 임플란트의 식립 깊 이도 중요한데 아무리 조직 변화의 양 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띠 정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.

이 변화는 치아의 혀쪽 방향과 뿌리쪽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런 조직 변화의 방향을 고려해서 임플란트의

깊이와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

그렇다고 모든 경우 즉시 임플란트 식 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치아 주변 조직이 상당량 파괴되었거나 임플란트 를 고정할 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 우는 즉시 식립을 권하지 않습니다.

이 경우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노력을 구하든지 조직 파괴전 상태로 조직을 재생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.

주변 조직의 파괴는 없으나 임플란트 를 식립 고정할 수 없는 경우 발치와에 뼈이식을 하여 발치와가 치유되는 동 안 발생하는 조직의 변화를 줄이도록 합니다.

이 술식을 '발치와 보존술' 이라고 하 며 임플란트 식립이 고려되는 부위뿐 아니라 통상적인 브리지 시술에서도 심 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도되 고 있습니다.

▶ 1321호에 계속됩니다.

YON DENTAL GROUP  
Gene H. Park DDS, MS  
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

Garden Grove Office: (714) 530-1948  
Fullerton Office: (714) 519-3932



##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
“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”

# 천관우 변호사 그룹
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 **프로디 관련 상담**

## 고국에 계신 부모님/배우자 영주권 신청

- 이민법** 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-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 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 추방유예상담, J1 Waiver, 영주권 인터뷰, 재입국허가서, 영주권 재발급, 시민권 신청 **\*취업 영주권 상담 / DACA 연장접수\***
- 부동산법**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박션)/Title에 대한 분쟁-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- 상법** 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**천관우 변호사**  
서울고·연세대·법학박사  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
josephlaw1224@gmail.com

☎ 상담문의

**LA Office 213-232-1655**  
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

**OC Office 714-522-5220**  
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